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년월일 : 2019. 0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관련 사업 및 관광용 가축사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가축 및 축사의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

2. 주요내용

- 관광지 등에서 관람용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 추가
(안 제3조제3항제2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 추가.(안 제3조제3항제8호)
- 가축 및 축사의 관리 규정중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 규정이 없어 톱밥깔짚 우사 관리기준 추가 (안 제5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7. 17. ~ 2019. 8. 6) 결과, 의견 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부속기관에서”를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젓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p> <p>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생략)</p> <p>2. 공공기관 및 그 <u>부속기관에서</u>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p> <p>3. ~ 7.(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현행과 같음)</p> <p>2. 공공기관 및 그 <u>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u>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p> <p>3. ~ 7.(현행과 같음)</p> <p>8. <u>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u>를 하는 경우</p>
<p>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 ----- ----- ----- ---</p>

1. ~ 5.(생략)

〈신 설〉

1. ~ 5.(현행과 같음)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비용발생 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 2340